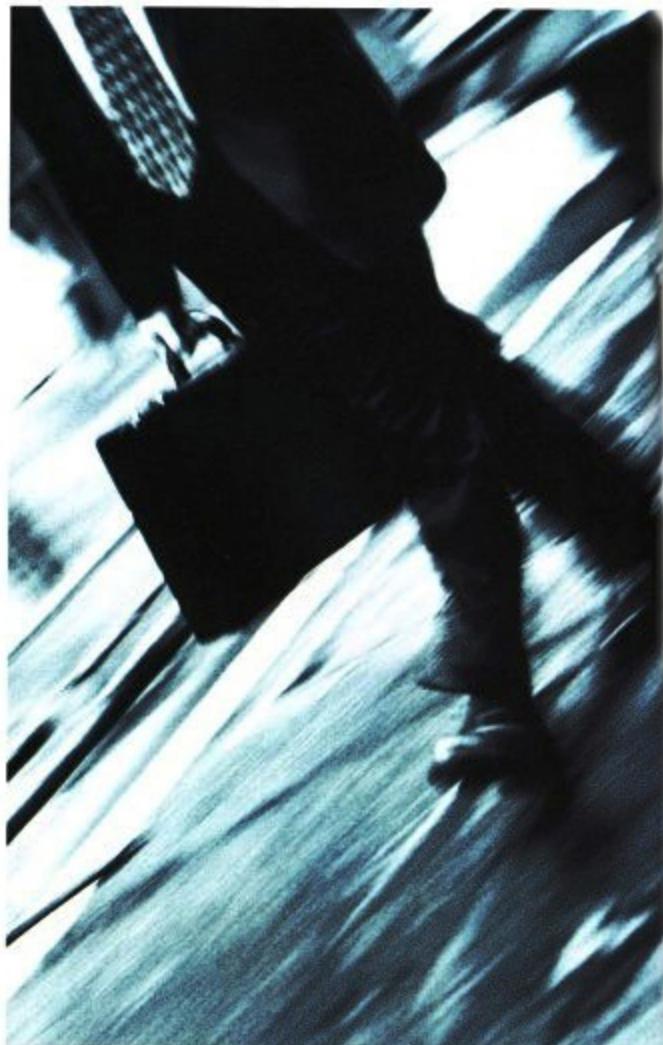


**지**난 해 하반기 이후 금융위기로 인하여 세계 경제가 몸살을 앓고 있다. 우리나라는 물론, 미국, 유럽, 동남아시아 등 세계 각국의 경기침체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 외 중에도 중국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이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은 7~8%의 경제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오히려 최근에는 중국당국은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다며 그 사전차단을 위한 조치마저 거론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G2”라는 신조어까지 생길 정도로 중국의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날로 커지고 있다. 최근 조지 소로스는 중국을 “긍정적인 힘(positive force)”으로 비유하며, 중국이 세계 경제가 최근의 경제위기에서 탈출하도록 원동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평가했다고 7월 8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이 전했다.

이러한 중국의 성장세는 중국의 성장엔진 자체가 충실한 것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금융위기에 대한 중국 당국의 적절하고 신속한 조치 때문이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지난해 수 차례에 걸친 금리안하 조치를 취하는 한편, 4조위안에 달하는 투자계획도 발표했다. 또한 ‘국십조’, ‘국구조’ 등의 부동산 부양책도 내놓았고, 대규모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나서고 있다. 이는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수출이 감소되고 있는 가운데, 내수확대를 통해 경기회복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중국의 경제성장세에 비추어 보면 우리나라의 대중국 투자도 상당히 늘어났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필자의 경험으로는 현재까지는 오히려 대중국투자가 상당히 감소하였다. 필자가 생각하는 원인은 첫째, 국내기업 및 금융기관의 자금경색 및 위기 회피 경향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즉, 중국시장이 아무리 전

망이 좋다고 하더라도 투자주체가 자금 사정이 안좋아 투자 여력이 없고, 투자여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도 워낙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이라 투자를 꺼리기 때문이다. 둘째로는 환율도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과거 1위안에 120원 ~ 130원 정도 하던 환율이 지금은 200원대 또는 그 이상에 달한다. 즉, 중국의 물가가 오르지 않았더라도 동일한 투자를 하려면 국내 조달금액은 거의 2배에 달하여, 수익성 맞추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어쨌거나 중국투자의 큰 일익을 담당하던 국내 금융기관들은 작년 하반기 이후 금년 상반기까지 거의 대중국투자를 하



## 세계경제위기와 중국경제

### 중국투자와 관련하여 유의할 사항에 대하여

지 않았다(물론 다른 투자도 거의 없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여러 곳에서 슬슬 중국투자를 모색하고 있는 모습이 감지된다. 누가 뭐래도 견실한 경제성장이 이루어지고 있고, 오히려 이를 바탕으로 위안화는 더욱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법적인 측면에서 유의할 사항을 몇 가지 생각해 보았다.

우선, 중국은 상당히 법제가 잘 짜여져 있는 나라라는 점이다.

무슨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중국의 경우 그러한 법적인 근거들이 생각보다 상당히 잘 갖추어져 있다. 법제가 잘 짜여져 있다는 것은 그 사업을 할 수 있는지 또는 없는지 여부에 대해 생각보다 법적 흥결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이는 사업하기 좋은 쪽으로 잘 갖추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해당 사업이 법령상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탈법적으로 그러한 제한을 회피하고자 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상당히 규율을 잘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흔히 중국을 판시의 나라라고 하여 인적 네트워크만 좋으면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법적 근거가 없으면 아무리 판시가 좋다고 하더라도 사업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두번째로는 중국의 법령은 상당히 자주 변경된다는 점이다. 이는 중국의 입법체계의 특수성에 기인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국회에서 입법을 하여야 하고, 행정부는 국회가 구체적으로 위임한 사항만 규율한다. 따라서 새로운 사항이나 변경된 상황에서 입법을 하고자

하는 경우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 그러나, 중국은 그러한 사항도 행정부가 규정할 수 있다. 즉, 중국법령의 특색은 상당히 중요한 사항도 행정부가 입법을 통해 규율할 수 있으며, 따라서 신속한 입법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당장 부동산 관련 입법만 보더라도 2006년 이후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 제한이 이루어진 이후 2007년 외자 부동산 개발회사에 대한 외재 제한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그것이 최근에는 그러한 제한이 완화되었다. 이는 모두 행정부의 입법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요컨대, 중국에서 사업을 하려면 법령의 제정, 개정, 변경에 수시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이다.

세번째로는 지방정부마다 어느 정도 자율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지방정부의 입법권을 통해 실현되기도 하지만, 법령해석 및 선례의 축적을 통해 이루어지기도 한다. 해석의 여지가 있는 법령의 경우 지방마다 통일적으로 규율되기를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지방에서는 법령을 어떻게 해석하고 운영하고 있는지도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한다.

“재벌이 가까울수록 아들은 절다”는 말이 더욱 절실한 요즘이다.

● 상해한국상회(한국인회) 회원사

# 법무법인 지평지성

“아시아를 대표하는 글로벌 명문 로펌”이 되겠습니다

‘법무법인 지평지성’은 2008년 9월 18일 법무법인 지평과 법무법인 지성과의 법률적 합병을 마치고, 총 120여명의 변호사 및 전문가를 보유한 대형로펌으로 거듭났습니다. ‘법무법인 지평지성’은 “아시아를 대표하는 글로벌 명문 로펌”으로서 앞으로도 고객 여러분께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고객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법무법인 지평지성 상해지사 소개**

- 한국기업의 중국 진출과 중국 진출 한국기업의 현지경영에 대한 종합적인 법률자문 제공
- 한국변호사, 중국변호사, 전문직원 등으로 구성
- 중국 현지 주요 로펌과 협력체

**주요 업무분야**

- 중국 내 현지법인 및 대표처 설립
- 중국기업과의 합작투자(Joint Venture) 및 전략적 제휴(합병 및 인수)
- 중국 내 부동산개발(SOC 등) 투자관련 자문
- 기술이전 계약, 수출입 계약 등 각종 국제계약 관련 자문
- 현지법인 운영 관련 법률(노동법, 세법 등) 자문
- 소송 및 중재 등 관련 자문

**담당 변호사**

상해지사	본사 중국팀
수석대표 최정식 변호사	중국팀장 염한석 변호사
김영동 중국변호사	정철 변호사
임호 중국변호사	김이태 변호사
임형 중국변호사	김국현 중국변호사
김혜숙 중국변호사	김정화 중국변호사
부용 중국변호사	

**지평지성**  
JISUNG HORIZON

서울본사 서울 종로 남대문로 4가 45 상공회의소 빌딩 11층  
상해지사 上海市 长宁区 兴义路 8号 万都中心大厦 2310室  
ホーチミン시지사 #2005 Saigon Trade Center, 37 Yen Duc Thang St, Dist.1, Ho Chi Minh City Vietnam

Tel: 82-2-6050-1800 Fax: 82-2-6050-1700 E-mail: naser@j-s-horizon.com  
Tel: 86-21-5206-2800 Fax: 86-21-5206-2807 E-mail: shanghai@j-s-horizon.com  
Tel: 84-8-910-7511 Fax: 84-8-910-7511 E-mail: dykim@j-s-horizon.com